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1 조(목적) <생략>	제 1 조(목적) <좌동>	
제 2 조(용어의 정의)	제 2 조(용어의 정의)	
① <생략>	① <좌동>	
1~7 <생략>	1~7 <좌동>	
8. "간편번호"란 <u><신설></u> 애플리케이션 <u><신설></u> 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 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.	8. "간편번호"란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애플리케이션(<u>이하 "애플리케이션"이라 함</u>)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 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.	- 용어 명확화
9. "바이오정보"란 지문, 얼굴,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 <u>를 의미합니다.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.</u>	9. "바이오정보"란 지문, 얼굴,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 <u>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.</u>	- 용어 명확화 (로그인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. 8호의 간편비밀번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)
10. "바이오인증"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.	<u>10.<삭제></u>	
11~12 <생략>	<u>10~11 <좌동></u>	- 호 체상

현행	개정(안)	비고
13. “금융회사”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,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(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), 저축은행, 우체국,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. 가~마 <생략> 14~15 <생략> ② <생략> 제 3 조(이용대상) <생략> 제 4 조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홈페이지 및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,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 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u>단,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 제 5 조(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) <생략> 제 6 조(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<u>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</u>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, 바이오<u>인증과</u>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③ <생략> ④ 바이오<u>인증</u> 5 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 1 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⑤~⑥ <생략>	12. “금융회사”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<u><삭제></u>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,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(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), 저축은행, 우체국,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. 가~마 <좌동> 13~14 <좌동> ② <좌동> 제 3 조(이용대상) <좌동> 제 4 조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<u><삭제></u>홈페이지 및 <u><삭제></u>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,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u>단, 채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 제 5 조(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) <좌동> 제 6 조(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)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<u>과</u>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, 바이오<u>정보와</u>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,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③ <좌동> ④ 바이오<u>정보</u> 5 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 1 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~⑥ <좌동>	- 호 체상 - 용어 명확화 - 호 체상 - 불필요 문구 삭제 - 서비스 내용 명확화 - 용어 명확화 (바이오 인증을 통한 등록 불가) - 용어 명확화 (2조와 통일) - 용어 명확화 (2조와 통일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7 조(은행 창구 이용방법)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<u>은행</u> 중 <u>은행</u>창구를 운영하는 <u>은행</u>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8 조(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<u>이용등록 후</u>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9 조(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<u>이용등록 후</u>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10 조(조회) <생략> 제 11 조(잔고이전 · 해지) ① 고객은 <u>제 5 조, 제 6 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</u>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“소액 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 ·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(CMA 평가 금액 포함)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 ·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②~④ <생략>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, 상호금융기관, 저축은행, 우체국의 정기에 · 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<u>제 5 조 및 제 6 조의 이용방법</u>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 · 해지가 가능합니다 ⑥<생략> 제 12 조(계좌지급정지)	제 7 조(<u>금융회사</u> 창구 이용방법)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<u>금융회사</u> 중 <u><삭제></u>창구를 운영하는 <u>금융회사</u>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8 조(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<u>를</u>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9 조(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<u>를</u>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10 조(조회) <좌동> 제 11 조(잔고이전 · 해지) ① 고객은 <u>제 4 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에서</u>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“소액 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 ·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(CMA 평가금액 포함)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 ·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②~④ <좌동>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, 상호금융기관, 저축은행, 우체국의 정기에 · 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<u>제 4 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인증정책</u>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 · 해지가 가능합니다. ⑥<좌동> 제 12 조(계좌지급정지)	- 용어 명확화 (4조와 통일) - 용어 명확화 - 용어 명확화 - 이용채널 명확화 - 이용채널 명확화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①~③<생략>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<u>동 서비스</u>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⑤~⑥<생략> 제 13 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①~②<생략> <u><신설></u> 제 14 조~제 16 조<생략> 부칙<제정> ~ 부칙<8> <생략> <u><신설></u>	①~③<좌동>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<u>계좌지급정지</u>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⑤~⑥<좌동> 제 13 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①~②<좌동> <u>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 5 조, 제 6 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(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)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.</u> 제 14 조~제 16 조<좌동> 부칙<제정> ~ 부칙<8><좌동> <u>부칙<9></u> <u>이 약관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 제 2 조 제 1 항 제 10 호 및 제 6 조 제 1 항이 적용됩니다.</u>	- 용어 명확화 - 보안성 강화 조치에 따른 추가 - 개정에 따른 부칙추가